

# 국 토 교 통 부

## 시 정 요 구

제 목 ○○천 ○○○ ○ 조성사업 정자 및 연못 반영 부적정

기 관 명 경상남도

관 계 기 관 진주시

내 용

진주시(○○○○과)에서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총사업비의 60%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2013. 7. 4. ○○○도 ○○시 ○○면 ○○○로 ○○에 있는 (주)○○○○ (대표자 ○○○)와 1개사<sup>106)</sup>와 ‘○○○ ○○○ ○ 조성사업’을 총 공사부기금액 9,809,332,000원<sup>107)</sup>에 도급계약하고 같은 해 7. 11. 착공하여 2018. 7. 26.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다.

「하천법」 제25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10년 단위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sup>108)</sup>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

---

106) ○○○○시 ○○구 ○○○로 ○○○에 있는 (주)○○○○○ 대표자 ○○○

107) 2015. 4. 7. 총 공사부기금액 10,013,232,000원으로 최종 변경계약 됨

108)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유역의 국토계획 및 도시·군 계획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기본계획의 목표, 하천의 개황,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및 그 경계, 하도와 유황의 개선,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

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진주시(○○○○과)에서는 지방하천 정비를 위해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여야 하고,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의 사업을 위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포함해서는 아니 되는 데도, ‘○○천 ○○○ ○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천기본계획 범위 밖에 있는 학교 부지에 [그림]과 같이 정자 및 연못 조성<sup>109)</sup>비를 설계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공사비 171,290,000원 상당이 교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우려가 있다.

[그림] “정자 및 연못 설치계획”



\* 진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 조치할 사항          진주시장은

위 공사에 교부 목적과 다르게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정자 및 연못 조성비 171,290,000원 상당을 설계변경하여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109) ○○대학교에서 정자 및 연못 설치 요청이 있다는 사유로 설계에 반영함